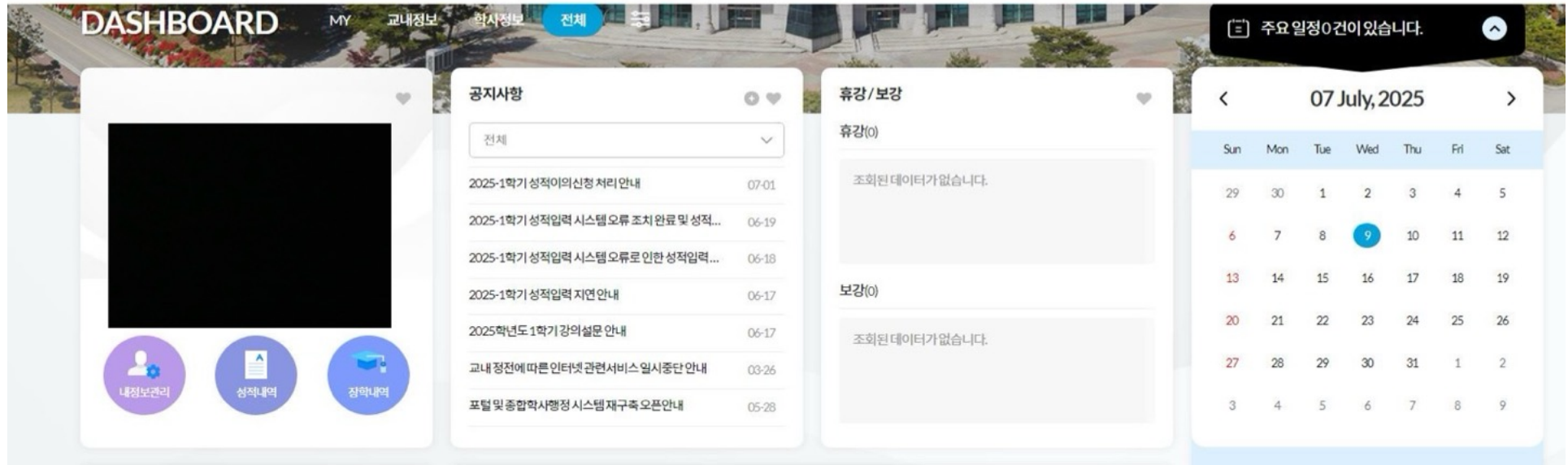


---

# 통합정보시스템

- 휴학 신청 방법 -

✓ 포털사이트 로그인 -> (1) 학사서비스 클릭 -> (2) 휴학/복학신청 클릭



## ✓ (3) 휴학신청 클릭

휴학/복학신청\* X

🔄 🔍 📄 ? 📱 🖨️ 🗄️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신청

**휴학/복학신청\***

소속	학부학과 학부학과 전기과		
학년(예정)	1(1)	학적상태	재학
학번	██████	성명	██████

**학적변동신청목록** 3

휴학신청
복학신청
엑셀
☰

순번	신청서종류	세부구분	신청일자	진행상태	학적변동승인일자

**학적변동 신청 진행상태**

순번	승인단계	승인상태	승인자구분	승인자	처리일자	반려사유

- ✓ (4) 휴학종류 군휴학 설정 -> (5) 복무구분/입영일자 설정 -> (6)증빙서류(입영통지서) 첨부
- ✓ 일반휴학 경우에는 휴학종류 **일반휴학** 설정 -> 6Page 참고하여 (6)증빙서류 첨부

휴학신청팝업
✕

**휴학신청**

학년도 / 학기	2025	2학기	도서대출	반납
등록금납부 여부	N		장학 수혜 여부	N
휴학종류	4	군휴학		
휴학학기수 / 일자	2	2025-07-09	~	2026-08-31
휴학종료학년도/학기	2026	1학기	복학예정학년도/학기	2026 2학기
복무구분/입영일자	5			전역예정일자
휴대전화			이메일	
증빙서류	6			
예비군 대상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상담내용	상담교수명: 상담일시: 상담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병적증명서	<p>본인은 위 사무(군휴학)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군휴학)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p>
-------	---

## ✓ 일반절차 종류

### 일반절차 종류

번호	일반휴학 종류	제출서류
1	어학연수 휴학	없음
2	취업준비 휴학	
3	경제사정 휴학	
4	기타 휴학	
5	질병 휴학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한 4주이상의 치료 진단서
6	창업 휴학	본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7	임신·출산 휴학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만 해당. 단, 매 학기 개시 후 4분의 3학기 이내의 기간에만 허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동의함 클릭 -> (7) 신청 클릭 시 완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병적증명서	<p>☑ 본인은 위 사무(군휴학)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군휴학)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p> <p><input type="radio"/> 동의함      <input checked="" type="radio"/> 동의하지않음</p>
-------	--

### ■ 휴학신청 유의사항

1. 휴학 신청학기에 장학금 수혜대상자에 경우 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학금 수혜 포기처리 되며 해당 학기 장학금은 이월되지 않음
  2. 도서대출자는 도서관에 대출도서를 반납해야 휴학신청 가능함
  3. 휴학 증빙서류
    - 1) 군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 2) 일반휴학 : 증빙서류 불필요
    - 3) 임신·출산·육아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4. 휴학기간 중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 시 해당 학과사무실로 연락해야 함
  5. 군휴학 관련
    - 1) 입대일 기준 1주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
    - 2) 일반휴학기간 중 군 입대 시 입대예정일 1주일 전 군휴학 신청해야 함
    - 3) 군휴학(입영휴학) 후 귀가 조치된 학생은 7일 이내 교무처로 신고해야 함
- ※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예비군 전입(해소) 신청 및 E-mail을 이용한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에 동의함
  7. 미복학제적 시 기납부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음
  8. 복학 시 야간이 없을 경우 주간에서 수강해야 하며,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위탁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만 복학 할 수 있음
  9. 문의처
    - 휴학문의 : 교무처(031-490-6012) / 소속학과사무실
    - 등록금문의 : 사무처(031-490-6031)

7

신청

[X] 닫기